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

○ '91년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의 변경 (기통수 → 씨씨당)에 부합토록 개정

○ 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2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

나. 주요골자

○ 자동차의 기준 조정 : 4기통 → 2,000씨씨이하

○ 세제지원대상추가 : 하지계통상이자 + 상지계통상이자

○ 면제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소방공동시설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1990. 12. 31개정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배기량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조례에서도 면제대상은 4기통이하에서 2,000cc이하로 개정하여 법령의 내용과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거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을 과세면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제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